

# 수도권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852(2020.11.4.)에 따라 5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는 지자체 신고·협의를 거쳐야 하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됨(별도 해제 시까지)  
- 다만,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본 조치를 따름

## 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 2 적용 대상

-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\*, 학술행사,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

\*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
\*\*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3 적용 기간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## 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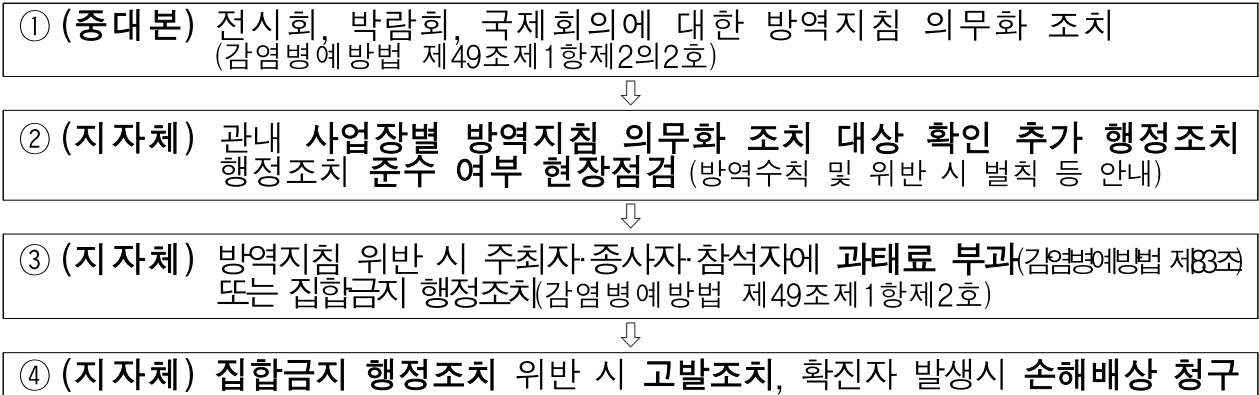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#### 4 추진내용 및 절차

※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

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

#### 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,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

#### <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</li> <li>▶ 감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▶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</li> </ul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<small>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small> 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'이용자'라 함은 주최자·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참석자 등 모임·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<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</li> <li>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'이용자'라 함은 주최자·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참석자 등 모임·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② 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③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

-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852(2020.11.4.)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 함

## 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 2 적용 대상

- (대상) 중점관리시설 9종

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 이상)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3 적용 기간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## 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 
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 
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
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**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제3항**

\* 공포(9.29) 3개월 후인 12월 30일부터 시행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**5 추진내용 및 절차**

① (중대본) **중점관리시설 9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**  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 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집합금지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\*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**

\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
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○ **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**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(참고1)**

\* 다만, 유흥주점·콜라텍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수칙 중 ‘시간제 운영’은 지자체별로 선택적 적용 가능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 
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-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

\* 다만, 식당·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

\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# 참고1

#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헌팅포차, 감성주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</li> <li>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li>■ 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사용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</li> </ul>
유형주점 (클럽, 료샬롱 등), 콜라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</li> <li>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■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</li> <li>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</li> </ul>	
단란주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</li> <li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li>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</li> <li>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 </li> <li>■ 시간제 운영(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) (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선택 가능)</li> <li>■ 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운영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</li> </ul>	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</li> <li>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</li> <li>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</li> <li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</li> <li>■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</li> <li>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</li> <li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■ 21시 이후 운영 중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</li> <li>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</li> <li>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</li> <li>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</li> </ul>

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</li> <li>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</li> <li>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</li> </ul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실내 스탠딩 공연장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</li> </ul> </li> <li>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</li> <li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li>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</li> <li>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</li> </ul>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 휴게음식점· 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·신고 면적 50㎡ 이상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(~12.6),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</li> </ul> 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</li> </ul> </li> <li>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/li> <li>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■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</li> <li>■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</li> <li>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</li> <li>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취폐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</li> </ul> </li> <li>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</li> </ul> <p>&lt;취폐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</li> <li>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
## 참고2

## 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영업 관련 FAQ

### Q1.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○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,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

- 여기에서 '테이블'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,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
좌석 한 칸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 실선 - 가림막)	

**Q2.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/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?**

- 칸막이·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,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
- 또한,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·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

**Q3.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, 일부 공간은 좌석/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?**

-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
- 예를 들어, 룸(room)과 홀(hall)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,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

**Q4. 식당·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?**

-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<sup>2</sup> 이상)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
- 다만, 전자출입명부를 미설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후 12월 7일부터 실시함

#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852(2020.11.4.)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 함

## 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 2 적용 대상

- (대상) 일반관리시설 14종

### < 일반관리시설 14종 >

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목욕장업 ▲ 공연장 ▲ 영화관 ▲ PC방 ▲ 오락실·멀티방  
▲ 실내체육시설 ▲ 학원(교습소 포함)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직업훈련기관  
▲ 놀이공원·워터파크 ▲ 아미용업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3 적용 기간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## 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 
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 
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
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**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제3항**

\* 공포(9.29) 3개월 후인 12.30일부터 시행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**5 추진내용 및 절차**

① (중대본)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 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 
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집합금지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 
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\*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 위반으로**  
**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  
 \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
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○ **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**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**(참고1)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 
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기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-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 
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 
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 
운영 중단 명령

\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# 참고

##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### □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오락실·멀티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</li> <li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# □ 실내체육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</li> <li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

## □ 영화관·공연장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 □ PC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□ 학원(독서실 제외, 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이·미용업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</li> </ul> <p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□ 독서실·스터디카페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▶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</li> </ul> <p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 □ 놀이공원·워터파크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 □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852(2020.11.4.)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

## 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 2 적용 대상

- (대상) 종교시설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3 적용 기간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## 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**

\* 공포(9.29) 3개월 후인 12.30일부터 시행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**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**5 추진내용 및 절차**

① (중대본)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 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 
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집합금지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 
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\*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 위반으로**  
**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
\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
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○ **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**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**(참고1)

○ **지자체장의 조치사항**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 
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- 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 - 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
  - \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</li> </ul> </li> <li>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 금지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</li> </ul> </li> <li>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</li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/ul> </li> <li>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</li> <li>■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</li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</li> </ul> </li> <li>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 금지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</li> </ul> </li> <li>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</li> <li>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## 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- 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 2 적용 대상

- (대상)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3 적용 기간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## 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- \* 공포(9.29) 3개월 후인 12.30일부터 시행

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## 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조치  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 
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집합금지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 
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\*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 위반으로**  
**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
\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
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### 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**(참고1)

### 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 
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 - 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
  - \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# 참고

#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### □ 콜센터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▶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▶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</li> </ul> <p>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# □ 유통물류센터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▶ 물류시설(구역)별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▶ 하역·운반 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·작업화 등) 매일 1회 이상 소독(대장 작성)</li> <li>▶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</li> </ul> <p>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